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12. 31.(금) / 총 4매(본문4)	
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남균, 사무관 강용관, 사무관승진예정자 박동국 • ☎ (044) 201-4772, 3870	
담당부서 항공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지홍, 사무관 김정한, 주무관 최규열 • ☎ (044) 201-4189, 4190	
보 도 일 시	즉시 보도가능합니다		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·「항공사업법」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**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**을 위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교통약자법)」 개정안과 **항공산업발전 조합 설립**을 위한 「항공사업법」 개정안이 **12월 31일 국회 본회의**를 **통과**하였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: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】

□ 먼저, 「교통약자법」 **개정안**은 **저상버스 도입 의무화**, **특별교통수단**의 **환승·연계 체계 구축** 등 **교통약자**의 **이동서비스 개선**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.

○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**시내버스, 마을버스** 등을 **대폐차**하는 경우 **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**이 설치되어 **휠체어 탑승자, 고령자** 등 교통약자가 **편리하게 승·하차**할 수 있는 **저상버스**를 **의무적으로 도입**하도록 하였으며,

○ **미세먼지**를 **줄이고 대기환경**을 **개선**하기 위해 **환경친화적 저상버스**를 **우선 구매**하도록 규정하였다.

□ **특별교통수단**의 **효과적 운영**과 **관할 행정구역 내 시·군 간 원활한 환승·연계**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**광역이동지원센터**를 **설치**하도록 **의무화**하고,

○ **시·도간 환승·연계 체계**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**국가 또는 도(道)**가 이동지원센터 **설치·운영비**를 **지원**할 수 있는 **근거를 마련**하였다.

○ 또한, **이동지원센터 운영**의 **실효성**을 **제고**하기 위해 위탁 대상을 **일정한 요건**을 **갖춘 기관·단체**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

○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**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**를 위해 **운행시간, 운행범위, 즉시배차 등 통일된 기준**을 대통령령으로 **마련**하도록 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, 「교통약자법」상 **교통수단**에 **궤도**(모노레일 등)·**삭도**(케이블카 등)을 **포함**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**이동편의시설 및 탑승보조서비스**를 **의무적으로 제공**하도록 하였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 개정, 세부기준 마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**공포 후 1년에서 2년 후부터 시행***될 예정이다.

*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1년, 특별교통수단 환승·연계 체계 1년 6개월, 궤도·삭도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2년

【 항공사업법 :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근거 마련 】

□ 「항공사업법」 개정안은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'**항공산업발전조합**'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, 그동안 정부는 경제 중대본('20.8월, '21.3월)을 통해 **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**한 바 있다.

○ **항공산업발전조합(이하 항공조합)**은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**항공금융기구**로, 조합원 출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**적립**하여 **보증, 펀드투자, 공동장비구매·임대**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**경영안정을 지원**할 예정이다.

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❶ 먼저, **항공사업자**(항공운송사업, 정비업, 취급업 등)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**는 **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'항공조합'을 설립**할 수 있으며, 조합원의 자격, 임원, 출자·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.

❷ 항공조합은 **보증, 투자,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**하고, 각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**국토부장관의 승인**을 얻도록 규정하였다.

❸ 또한,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**운영위원회**를 두고,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**운영위원회(15인)의 과반 이상(8인)을 비조합원으로 구성**하도록 하였다.

❹ 한편, **국토교통부장관**은 항공조합의 **재무건전성 유지** 등을 위해, 조합을 지도할 수 있도록 **감독 기준을 고시**하고, 조합의 재무상태가 **고시한 기준에 미달**하게 될 경우 조합이나 임원에 대하여 권고·요구 또는 **이행계획을 제출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**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**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**「교통약자법」 개정**으로 **장애인·고령자 등 교통약자*** **모두**가 **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** 기대된다고 밝혔다.

*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전체인구(5,183만명)의 약 29.7%인 1,540만명('20년말 기준)

○ 또한, 이번 **「항공사업법」 개정**에 따라 ‘22년 말까지 **항공조합을 설립**하여, 감염병·외교관계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**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**하고 국가기간교통으로서의 **항공분야 역할도 강화**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강용관사무관(☎ 044-201-4772, 교통약자법), 박동국사무관 (☎ 044-201-3870, 교통약자법),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김정한사무관(☎ 044-201-4189, 항공사업법),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